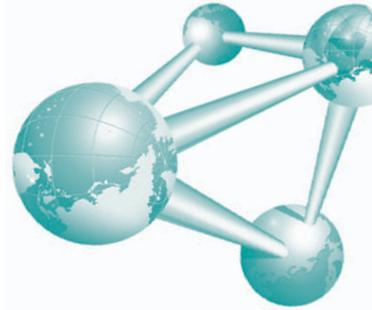


#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



정보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I. 개요

### 1.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현황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 해마다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이후 사회부적응, 직업선택의 어려움, 빈곤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청소년 직업대책, 청소년 주거와 같은 전형적인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사업(Streetwork)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방, 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독일은 중앙의 연방정부(Bund)와 16개의 주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주, 자치단체 등은 독일 기본법 제28조 등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행정과 실천 또한 대부분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를 근거로 2008년 기

준 약 47개의 청소년 일터, 62개의 청소년 상담소, 그리고 학교에 흥미를 잃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59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직업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 지원 역시 다양한 목표 집단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중심이 된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적 지원(제1항),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교육 및 취업 대책(제2항), 그리고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주거 형태(제3항)로 분류될 수 있다.

## 2. ‘학업중단’의 개념정의

‘학업중단’이란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Schulabbruch)는 물론 아직 학교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교 거부(Schulverweigerung)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 제1호와 제2호 규정<sup>1)</sup>에서도 유추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제하에 제1호에서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제2호에서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호의 내용이 독일의 학교거부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제2호의 내용은 학업의 완전한 중단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거부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인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 3.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활동의 근거 법률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재단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근거 법률이다. 국민대학의 운영, 설립은 각 주의 계속교육법(Weiterbil-

###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dungsgesetz) 규정을 근거로 한다. 또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계속교육법과 함께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델 프로그램인 JUGEND STÄRKEN(청소년을 강하게!)를 위한 지원지침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II. 독일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법률

### 1.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 1)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격

독일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부분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수행한다. 각종 프로젝트들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과 교육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보다 사회교육학적 사업과 치료적인 지원 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한다.

#### (2) 사회교육학적 지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별 면담, 학교나 직업에 관한 상담, 중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 부모와의 대화 등과 같은 청소년들의 전체 생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교육학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 (3)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결합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학교 졸업 준비와 직업 준비를 결합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 직업에 연관된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주요 강의 주제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장소의 탐색, 예를 들면 실무적 프로젝트 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 대화기법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 2)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예

(1)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에슬링엔, 빌헬름스플레게 재단)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퇴학, 제적 당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14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 자격을 갖추어,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젝트 “Lern x anders” (포르츠하임)

프로젝트 “Lern x anders(배움 x 다른 것)”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거부하여 이미 여러 번 학교를 전학한 경험이 있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교육학적, 경험교육학적인 케어와 함께 학교거부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학교의 졸업 준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소규모 모임에서의 개별적인 성취경험이 특별한 중요성을 차지한다.

(3) 프로젝트 “학교거부학생과 장기(상습)결석학생” (로이틀링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교거부 학생과 장기

(상습)결석 학생들을 보통의 학교교육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이다. 학교거부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가족, 학교,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청, 상담소, 경찰 그리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한다.

3)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법적 근거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인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13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을, 제27조에서는 교육지원을, 제83조에서는 연방과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1)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13조<sup>2)</sup> :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



2) § 13 Jugendsozialarbeit

- (1) Jungen Menschen, die zum Ausgleich sozialer Benachteiligungen oder zur Überwindung individueller Beeinträchtigungen in erhöhtem Maße auf Unterstützung angewiesen sind, sollen im Rahmen der Jugendhilfe sozialpädagogische Hilfen angeboten werden, die ihre schulische und berufliche Ausbildung, Eingliederung in die Arbeitswelt und ihre soziale Integration fördern.
- (2) Soweit die Ausbildung dieser jungen Menschen nicht durch Maßnahmen und Programme anderer Träger und Organisationen sichergestellt wird, können geeignete sozialpädagogisch begleitete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maßnahmen angeboten werden, die den Fähigkeiten und dem Entwicklungsstand dieser jungen Menschen Rechnung tragen.
- (3) Jungen Menschen kann während der Teilnahme an schulischen oder beruflichen Bildungsmaßnahmen oder bei der beruflichen Eingliederung Unterkunft in sozialpädagogisch begleiteten Wohnformen angeboten werden. In diesen Fällen sollen auch der notwendige Unterhalt des jungen Menschen sichergestellt und Krankenhilfe nach Maßgabe des § 40 geleistet werden.

사회적 박탈에 대한 보상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의 극복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원에 의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지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 직업 교육, 직업세계로의 편입, 그리고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는 사회교육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제1항).

이들에 대한 교육이 다른 주체나 기관의 조치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는 한, 이들의 능력과 발전상황을 고려한, 사회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부가된 교육대책과 취업대책이 제공될 수 있다(제2항).

아동 및 청소년은 학교 혹은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혹은 직업적인 편입 시,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되는 주거 형태에서의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필수적인 생계가 보장되고 제40조에 비례하여 의료보조도 주어진다(제3항).

이러한 제공은 학교행정, 연방노동청, 직장 등 타 기관 지원 직업교육과 국비지원 직업교

육의 주체 및 일자리 제공 주체의 대책과 조화되어야 한다(제4항).

(2)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27조 제3항<sup>3)</sup> : 교육지원

교육지원은 특별히, 교육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치료적 활동의 보장을 포함한다. 이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에서의 교육 및 취업대책이 필요한 경우도 포괄한다.

(3)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83조<sup>4)</sup> : 연방과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의 임무

전문 관할권을 가진 연방 최고행정청은 청소년지원 활동이 초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성질상 주 단독으로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제1항).



- (4) Die Angebote sollen mit den Maßnahmen der Schulverwaltung,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Träger betrieblicher und außerbetrieblicher Ausbildung sowie der Träger von Beschäftigungsangeboten abgestimmt werden.
- 3) § 27 Hilfe zur Erziehung
- (3) Hilfe zur Erziehung umfasst insbesondere die Gewährung pädagogischer und damit verbundener therapeutischer Leistungen. Sie soll bei Bedarf Ausbildungs- und Beschäftigungsmaßnahmen im Sinne des § 13 Abs. 2 einschließen.
- 4) § 83 Aufgaben des Bundes, Bundesjugendkuratorium
- (1) Die fachlich zuständige oberste Bundesbehörde soll die Tätigkeit der Jugendhilfe anregen und fördern, soweit sie von überregionaler Bedeutung ist und ihrer Art nach nicht durch ein Land allein wirksam gefördert werden kann.
- (2) Die Bundesregierung wird in grundsätzlichen Fragen der Jugendhilfe von einem Sachverständigengremium (Bundesjugendkuratorium) beraten. Das Nähere regelt die Bundesregierung durch Verwaltungsvorschriften.

연방정부는 청소년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2항).

## 2. JUGEND STÄRKEN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지원지침<sup>5)</sup>

### 1)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모델 프로그램 : “학교거부 - 두 번째 기회 (Schulverwigerung- Die 2. Chance)”

독일 연방 최고 행정청인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독일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원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따라서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모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유럽연합 사회기금(Der Europäische Sozialfond, ESF)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JUGEND STÄRKEN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JUGEND STÄRKEN은 독일 전역의 약 1,000개

센터와 밀접한 협력망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사회, 교육, 직업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JUGEND STÄRKEN의 4가지 하위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학교거부 - 두 번째 기회(Schulverwigerung - Die 2. Chance)”를 주목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학교 거부에서 벗어나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을 낮추고, 따라서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독일 전역에서 191개의 상담소와 지원센터가 이용되고 있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원지침(Förderleitlinien)을 제정하여 목적, 대상, 법적 근거, 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2) JUGEND STÄRKEN 프로그램 지원지침(주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1) 지원 대상과 목표그룹

##### ① 학교거부(Schulverweigerung)

현재 해마다 전체 졸업생의 약 7.5%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다. 학교를 떠나는



5) Weiterentwicklung der Initiative JUGEND STÄRK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auf der Grundlage der Umsetzungsergebnisse aus den Programmen Schulverwigerung - Die 2. Chance, Kompetenzagenturen und Jugendmigrationsdienste - Förderleitlinien.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학교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있다. 학교거부는 학교에 가지 않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거부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학교거부 - 두 번째 기회(Schulverweigerung - Die 2. Chance) 프로그램의 목표는 적어도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수를 늘리고 이로써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이 다시 규칙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졸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 〈목표그룹〉

- 일반학교(Allgemeinbildende Schule) 학생의 경우
  - 12살부터 마지막 학년의 시작 전까지
  - 하우푸트슐레(기초학교, Hauptschule), 장려학교(Förderschule) 혹은 다른 형태의 학교에 다니고 기초학교 졸업이 가능한 상태이며
  -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학교거부로 인해 졸업이 위태로운 학생
- 직업학교(Berufliche Schule)의 학생의 경우 또한 기초학교 졸업이 가능하지만
  -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학교 거부로 인해 졸업이 위태로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사무국의 과제〉

사무국의 담당자들은 찾아가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aufsuchende Ansätze der Jugendsozialarbeit), 학교사회사업(Schulsozialarbeit), 모바일 청소년사업(Mobilen Jugendarbeit) 그리고 지역의 숙소관리처(Quartiermanagement)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적인 단계에서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 학생, 부모, 학교와의 협의하에서 학생 개인의 발전계획과 교육계획을 구성, 전환, 발전
- 학교 및 사회와의 융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 제공의 조정(경우에 따라서는 도입, 참가) 및 부모, 교사, 사회적 직무 전문가 등의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지원 제공의 결과 관리와 조정
- 학생, 부모, 학교와 함께하는 직접적인 사회교육학적 사업 조정

[ ... 중략 ... ]

이들은 특히 다음의 기관들과 함께 수행하게 된다.

- 청소년의 학교, 직업 선택 등에 관련된 다른 지원주체나 프로젝트
- 독일 사회법전 제8권에 따르는 지원계획에 협력하는 청소년청(Jugendamt)
- 학교 및 교육청(Schulamt)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학교(Berufsschule)
- 지역의 노동집단(Arbeitsgruppen), 독일

상공회의소(Industrie- und Handelskammern), 노동청(Agenturen für Arbeit), 기초보장의 주체(Trägern der Grundsicherung), 교육기관(Bildungseinrichtungen)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망에의 편입 및 발전

[ ... 중략 ... ]

(2) 법적 근거

프로젝트는 이 지원지침과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ordnung, BHO) 행정규칙 제23조와 제44조에 의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보조금의 보장에 대한 법률상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자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재정의 운용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3.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1) 학교 졸업 지원 : 국민대학(Volkshochschule)

2010년 독일 국가교육보고서(Der Nationale Bildungsbericht)에서는 ‘졸업’을 이후의 삶과 직업에 대한 결정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차후에라도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의미 있는 기여이며, 학교와 계속 교육 사이를 중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졸업하지 않고 학업을 완전히 중

단한 경우라도, 야간 레알슐레(Realschule, 실업계학교), 야간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학교)을 통하여, 혹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직업학교(Berufskolleg)나, 국민대학(Volkshochschule)과 같은 계속교육기관에서 차후에 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에는 135개의 지역 국민대학(Volkshochschule) 중 80개 정도가 학교 졸업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독일 성인교육연구소 (Deutschen Instituts für Erwachsenenbildung, DIE)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만 약 4,200명이 국민대학(Volkshochschule)에서 뒤늦게 졸업장을 받았다.

2)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계속교육의 조직과 지원을 위한 첫 번째 법률 - (Erstes Gesetz zur Ordnung und Förderung der Weiterbildung im Lande Nordrhein-Westfalen)

독일의 국민대학(Volkshochschule)은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독일의 평생교육법에 해당하는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은 주 법률로, 주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계속교육법의 주요 규

정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교육법 제1조 제1항<sup>6)</sup> : 계속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격을 자유로이 개진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심화시킬 권리가 있다.

(2) 계속교육법 제6조<sup>7)</sup> : 시험

계속교육기관은 만약 준비된 교과과정이 상응하는 국가 교육과정과 동등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시험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특히 뒤늦게 치르는 학교 졸업장 취득 시험에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시험의 수행과 준비 교과과정은 관할 부서와 법규명령에 의

하여 정해진 감독청의 전문적인 감독하에 있다(제1항).

관할하는 부(Ministerium)는 법규명령을 통해서, 자격증이나 졸업증명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규격화되고 결합 가능한 교육 단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제2항).

학제를 관할하는 부(Ministerium)는 법규명령을 통해서 시험규정을 공포한다. 학교법 제 51조 제1항은 이에 상응하게 효력이 있다(제3항).

(3) 계속교육법 제11조<sup>8)</sup> : 기본급부

계속교육 제공과 관련한 기본적인 급부는 국민대학의 의무적인 제공에 의해서 확보된다(제



6) § 1 Recht auf Weiterbildung

(1) Jede und jeder hat das Recht, die zu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und zu freien Wahl des Berufs erforderlichen Kenntnisse und Qualifikationen zu erwerben und zu vertiefen.

7) § 6 Prüfung

(1) Einrichtungen der Weiterbildung haben das Recht, staatliche Prüfungen durchzuführen, wenn die vorbereitenden Lehrgänge den entsprechenden staatlichen Bildungsgängen gleichwertig sind. Dies gilt insbesondere für Prüfungen zum nachträglichen Erwerb von Schulabschlüssen. Die Durchführung dieser Prüfungen und der vorbereitenden Lehrgänge unterliegt der Fachaufsicht des zuständigen Ministeriums und der von ihm durch Rechtsverordnung bestimmten Aufsichtsbehörde.

(2) Das zuständige Ministerium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inwieweit typisierte und kombinierbare Einheiten von Lehrveranstaltungen den Erwerb von Zeugnissen und Abschlusszertifikaten in Teilabschnitten ermöglichen.

(3) Für Prüfungen zum nachträglichen Erwerb von Schulabschlüssen erlässt das für Schulwesen zuständige Ministerium durch Rechtsverordnung Prüfungsordnungen; § 51 Abs. 1 Schulgesetz gilt entsprechend.

8) § 11 Grundversorgung

(1) Die Grundversorgung mit Weiterbildungsangeboten wird durch das Pflichtangebot der Volkshochschulen sichergestellt.

(2) Das Pflichtangebot der Volkshochschulen umfasst Lehrveranstaltungen der politischen Bildung, der arbeits- und berufsbezogenen Weiterbildung, der kompensatorischen Grundbildung, der abschluss- und schulabschlussbezogenen Bildung, Angebote zur lebensgestaltenden Bildung und zu Existenzfragen einschliesslich des Bereichs der sozialen und interkulturellen Beziehungen sowie Angebote zur Förderung von Schlüsselqualifikationen mit den Komponenten Sprachen und Medienkompetenz. Zur Grundversorgung gehören auch Bildungsangebote, wie sie im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der Familienbildung zugewiesen sind.

1항).

국민대학의 의무적 제공은 정치교육 과정, 직업세계 혹은 직업과 관련한 계속교육, 보상적인 기초교육, 졸업관련 그리고 학교 졸업과 관련된 교육, 사회적이고 다양한 문화 상호 간의 교제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생활형성적인 교육 및 생존문제에 대한 제공 및 언어 요소와 의

사소통능력을 포함한 해결능력의 지원과 같은 제공을 포괄한다. 기본급부에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의 가족교육에서 나타난 교육제공 또한 포함된다.

구 슬

(하노버 대학교 박사과정)

## 참고문헌

### 인터넷 사이트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홈페이지 : <http://www.bmfsfj.de>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www.jugendstaerken.de/>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학교거부 두 번째 기회(Schulverweigerung- Die 2. Chance)” 프로그램 홈페이지 : <http://www.zweitechance.eu>

### 브로슈어

- Raus aus der Sackgasse! Dokumentation des Programms „Hilfen für Straßenkinder und Schulverweigerer“ (딱다른 골목에서 나와라! 거리의 청소년과 학교거부 학생을 지원프로그램 자료), LANDESSTIFTUNG Baden-Württemberg (바덴 뷔어템베르크 주 재단 발행).
- Zweite Chance für Jugendliche ohne Abschluss (졸업장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VHS Dortmund(도르트문트 국민대학 발행).